

기술·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(제14조제7항 관련) **일부**

| 등급 | 응시 자격 |
|----|--|
| 기사 | <p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.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을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.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.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.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.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.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|

비고

1. "졸업자등"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대학(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. 이하 "대학등"이라 한다)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"대학졸업자등"으로 보고,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"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"으로 본다.
2. "졸업예정자"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(필기시험이 없거나 면

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현재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
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
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(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
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
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
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)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, 81학점 이
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,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
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.

3. 「고등교육법」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
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,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.
4. "이수자"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
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.
5. "이수예정자"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
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
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